삼정 KPMG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November 03, 2025

삼정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그룹 내 자금조달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판결

2025년 8월, 체코 최고행정법원(SAC)은 기업그룹의 내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문제에 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SAC는 법의 남용(abuse of law) 적용 관점에서, 해외에서 이루어진 이자소득 과세가 체코 내에서 획득한 조세상 이익과 비교해 현저히 불균형적인지 여부를 따져 보았습니다.

1. 판결 개요

세무당국은 해당 그룹 내부 구조조정이 실질 없이 이자비용 공제라는 조세상 이익을 획득하려는 목적이 우선했다고 보아 법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자는 이자소득이 해외에서 이미 과세되었으므로 실제 조세상 이익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SAC는 하급심 법원(Regional Court)의 판단을 유지하여, 해외 과세가 체코에서 얻은 조세상 이익에 비해 현저히 불균형적이라고 보아 법의 남용을 인정했습니다.

2. SAC의 판결의 의의

하급심 법원과 SAC 모두 유사한 사안에서, 자금차입이 그룹 전체의 관점에서 새로운 기업인수(new acquisition)에 사용된 것인지, 또는 객관적으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거나 기존 소득 유지에 기여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그룹 내부 구조조정(배당금 및 자본의 지급거래 포함) 과정에서 관련당사자 및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상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실무상 시사점

- 구조조정 단계의 부채조달 목적·자금흐름 문서화: 차입금이 실질적으로 신규 인수·투자에 투입되었는지, 또는 소득 창출·유지에 기여했는지 입증 자료 필수.
- 해외 원천과세 vs 체코 내 공제 효과의 균형: 해외 과세가 체코 내 손금산입으로 인한 이익과 균형적인지 정량 비교(세율·세액 기준) 필요. 현저한 불균형은 법의 남용 리스크를 높임.
- 자본거래(payments from equity) 포함 범위 점검: 배당, 자본환급 등 자본거래가 수반되는 경우 세무상 효과를 사전 검토.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협의체(암스테르담 협의체, Amsterdam Dialogue on Global Minimum Tax Compliance)」

암스테르담 회의는 2025년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영국 맨체스터에서 개최되어 세 개의 세션으로 논의되었습니다.

-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현황 및 진행 중인 과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이행 현황에 대한 최신 동향을 공유함
-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이행상의 과제 및 대응 방안): 납세자 등록 및 신고 절차, 세이프 하버 적용, 글로벌 정보신고서(Global Information Return, GIR) 작성과 관련된 주요 이행상 어려움에 대해 논의함
- 글로벌 최저한세 조정 및 일관성 확보: 국가별 등록·신고 요건 차이, 규정 해석 및 적용상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 이슈에 대해 논의함

  - **주요 인사이트와 시사점**

① 세이프 하버(Safe harbors)

OECD 사무국은 간이실효세율(Simplified Effective Tax Rate, ETR) 세이프 하버에 대한 작업이 진행, 연내 합의 도달 가능성 강조.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CbCR) 기반 전환기적용면제의 적용기간 연장 가능성 논의.

② 공동기업(Joint Ventures, JVs) 및 부분소유모기업(Partially-Owned Parent Entities, POPEs)

JVs 및 POPEs 관련 규정 적용 복잡. JVs 의 경우, 규정 적용에 필요한 데이터 자체를 수집하는 과정이 어려움. JVs 와 POPEs 모두에 대해 발생한 추가세액을 소수지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전개.

③ 인수합병(Mergers & Acquisitions, M&A)

인수 대상이 취득되는 즉시 그룹의 Pillar Two 적용 범위에 포함. 회계시스템상 통합은 즉각적으로 어려움. 필수 데이터 확보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함. 이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 목적상 계산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④ 이전가격 및 회계연도 종료 이후 세무조정

이와 관련된 불일치 및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지적,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통해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⑤ 초인플레이션 통화(Hyperinflationary Currencies)

아르헨티나, 터키 등 초인플레이션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세액(Top-up Tax)이 발생할 가능성. OECD 사무국은 해당 이슈를 인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⑥ 조세확실성 및 분쟁 예방·해결

각국 조세당국은 기업들로부터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된 조세확실성을 조기에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시키고 있음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서면-2023-국제세원-1630, 2025. 09. 01.

제목: 해외법인 주식의 양도와 조세조약 적용 등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필리핀 소재 해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필리핀 내 주택을 소유하고 급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등 가족과 함께 대부분의 기간을 필리핀에서 거주함
- 다만, 한국법인의 공동대표로도 재직하며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였으나, 필리핀 체류 중에는 임대하였고 한국 방문 시 친인척 주거지에 체류함

- 신청인은 필리핀 법인의 주식을 한국법인에 양도하였으며, 필리핀 거주자로서 필리핀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또한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한국 국세청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2. 질의요지

-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조(인적범위)에서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이 이중거주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방지)가 이중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인지
- 비거주자가 한국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 시 거주자로 신고한 경우 그 신고가 신고인을 거주자로 확정하는지
- 신청인이 이중거주자로서 한-필리핀 조세조약에 의하여 필리핀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 필리핀 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한국에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단, 필리핀법인은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3. 답변내용

- 한국 및 필리핀 세법상 모두 거주자인 이중거주자의 경우에도,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조에따라 제23조 규정이 적용됨
-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신고서 기재 내용과 관계없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됨
-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필리핀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필리핀 주식 양도에 따른 이득은 거주지국인 필리핀에서만 과세할 수 있음
- 다만,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함

4. 관련법령

-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조【인적범위】
-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3조【양도이득】
-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03 관세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 최종 타결

1. 협정 개요 및 체결 배경

2025 년 10 월 26 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무리하고, 10 월 27 일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공식 타결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번 협정은 한국이 체결한 27 번째 자유무역협정이며, 아세안(ASEAN) 핵심 파트너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별도 양자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기존 다자협정(RCEP, 한-아세안 FTA 등) 대비 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2. 개방 내용 요약[1][2]

양국이 각각 관세개방을 약 **한국 94.8%, 말레이시아 92.7%** 수준으로 설정했습니다. +1

구체 수치로는 말레이시아가 총 **682 개 품목**, 한국이 **288 개 품목**에 대해 **기존 한-아세안 FTA 및 RCEP 대비 추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약속했습니다.

[주요 개방 품목]

- 자동차 분야: 전기차 세단·SUV 완성차(CKD 세트)의 기존 관세(10%)가 철폐되며, 완성차 SUV(30%) 관세는 절반 수준으로 감축. 가솔린·하이브리드·디젤 CKD 도 단계적 인하 적용.
- 철강 분야: 냉연·도금강판 등 9 개 품목은 관세 철폐, 열연 등 12 개 품목은 관세가 기존 15%에서 10%로 인하
- 화학제품: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등 주요 화학소재 수출기업에 유리한 관세철폐 조치 포함

[1]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F65A29C2F0432AECD673B9C1F5DA2D11.Hyper?no=96160&siteId=1

[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3182&utm

- 농식품 및 수산물: 한국이 말레이시아에 개방하는 품목. 레몬주스, 두리안, 넙치, 게, 연어 등.

반면 국내 민감 농식품(쌀·채소·새우·고등어·표고버섯 등)은 이번 협정에서 추가 개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전략산업 및 협력 영역 확대

이번 협정은 상품·관세 문제를 넘어 디지털무역, 인공지능(AI), 스마트인프라, 녹색경제·바이오경제 등 미래지향적 분야를 별도로 설정하였고, 양국은 해당 분야에서의 협력 플랫폼 마련에도 합의했습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방산산업 협력 및 국방협력 강화 가능성도 언급하였으며, 특히 말레이시아 측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방산파트너로 평가하였습니다.

4. 기대효과 및 시사점

한국 기업 측면에서는 자동차·철강·화학 등 주력 수출 산업에 대한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문턱이 낮아져 수출 확대 및 생산거점 다변화 기회가 마련됐다는 분석입니다.

동시에 말레이시아는 팜유, 주석, 천연가스 같은 자원 및 반도체 테스트·패키징 허브 기능을 갖춘 국가로서 한국 기업의 공급망 전략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불안정한 글로벌 통상환경과 미-중 무역갈등을 고려했을 때, 아세안 내 핵심 교역국과의 양자 협정은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5. 앞으로의 절차 및 비준 전망

협정이 공식 타결(서명 예정)된 상태이며, 향후 국내 비준 절차(국회 승인 등)를 거쳐 발효될 전망입니다.[3]

[3]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CONTENTS_NO=1&MENU_ID=1420&SITE_NO=3&bbsGbn=506&bbsSn=506&pEndDt=&pKbcCd=&pNatCd=&pNttSn=235915&pRegnCd=&pStartDt=&pageNo=1&pagePerCnt=10&recordCountPerPage=10&sSearchVal=&sSearchVal=&viewType=&utm

발효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2026 년 내 발효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4] 또한, 세부 관세철폐 일정표, 원산지규정 부속협정,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조건 등은 협정문 확정 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제 3 국 조립·완성 우회덤핑 방지 기준 신설

기획재정부는 2025 년 10 월 17 일자로「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5] 이번 개정은 제 3 국을 경유해 덤핑물품을 조립·완성하는 방식의 '우회덤핑' 행위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관세법 시행령」개정(시행예정)에 맞춰, 그 구체적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제도는 우회덤핑 행위 중 '경미한 변경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제 3 국에서 조립·완성되는 형태의 우회덤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제 3 국 조립·완성 여부 판단 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조립·완성 공정의 성격과 비용 규모
- 투입 설비 및 투자 수준
- 덤핑물품 공급국의 부품·원재료 비중, 제 3 국 내 부가가치 창출 비율
- 덤핑조사 전후의 교역 흐름 변화 등

제 3 국에서 부품을 조립하거나 완성해 국내로 수입하는 기업의 경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우회덤핑'으로 판단되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생산공정의 실질적 기여도, 부가가치 창출 비율, 교역 패턴 등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5/10/1304181/south-korea%E2%80%93malaysia-fta-expected-be-approved-early-2026?utm

[5] https://www.moef.go.kr/lw/lap/detailTbPrvntcView.do?bbsId=MOSFBBS_000000000055&searchNttId1=MOSF_00000000075606&menuNo=7050300

Key Contacts

삼정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황수주 상무

T. 02-2112-6782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김민철 상무(관세)

T. 02-2112-6763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